

산업체현장실습 규정

□ 제정 : 2008. 03. 01

□ 개정 : 2016. 03. 01

□ 개정 : 2017. 05. 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“라 한다.) 학칙 제33조의 현장실습수업(이하 “현장실습“이라 한다.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현장실습이란 학생들에게 재학 및 방학 중 일정기간 동안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의 전문지식을 얻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신청자격 및 절차) ① 3학년이상인 자로서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으로 한다. 단, 산업체에 재직중인자는 제외한다.

② 국외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국 언어사용이 가능하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이어야 한다.

③ 선택교양과목으로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학부(과)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신청서를 취업정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선발) ① 총장은 본 대학교 및 현장실습기관의 선발기준에 의거 실습 분야와 실습 여건 등을 고려한심사를 거친 후 현장실습생을 선발한다.

② 전항의 선발을 위해 필요시에는 실습시작 전에 해당 학부(과)장이 현장실습기관의 자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현장실습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총장의 허가 없이 현장실습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.

제5조(학점인정 절차) ① 선택교양에 한하여 수강신청은 소정의 절차를 걸쳐 학적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.

② 현장실습을 완료한 학생은 현장실습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성적인정 요청서를 해당 취업정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학점인정 및 성적표기) ①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학기(계절학기 포함) 학점으로 인정한다. 현장실습참여 시수에 따라 소정의 전공선택 학점을 부여한다.

② 취득한 학점은 Pass/Reject 처리하고 평점평균(G.P.A)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.

③ -삭제-

④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이수에 따른 학점 규정은 현장실습 기간에 따라 학기제(정규학기 중 실시) 및 시간제(정규학기중, 방학기간 중 실시)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- 실습기간은 8시간/일, 40시간/1주일, 1주일은 5일 기준으로 하며, 실습 중도해지자의 경우 학점이 인정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
- 학기제: 정규학기 중 8시간/일, 40시간/1주일, 1주일은 5일 기준으로 15주 이상이면 15학

점을 부여하며 9학점은 전공선택, 6학점은 선택교양 학점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 (※ 단, 성적장학금 대상자에서는 제외된다)

- 시간제: 정규학기 및 방학기간 중 8시간/일, 40시간/1주일, 1주일은 5일 기준으로 2주 이상~ 3주 미만은 전공선택 2학점, 3주 이상 ~ 4주 미만은 전공선택 3학점, 4주 이상 ~ 8주 미만은 전공선택 및 선택교양 6학점, 8주 이상 ~ 15주 미만은 전공선택 및 선택교양 9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〈현장실습 기간에 따른 학점 이수구분 및 인정학점 기준표〉

기간구분	교과목명	실습기간	이수구분	인정학점
시간제 (학기중, 방학중 가능, 하루 8시간 . 40시간/1주 근무, 1주일은 5일 기준)	현장실습 1	2주 이상 ~ 3주 미만	전공선택	2학점
	현장실습 2	3주 이상 ~ 4주 미만	전공선택	3학점
	현장실습 2-1	3주 이상 ~ 4주 미만	전공선택	3학점
	현장실습 3	4주 이상 ~ 8주 미만	전공선택	6학점
	현장실습 3-1	4주 이상 ~ 8주 미만	교양 6영역 (취업과진로)	6학점
	현장실습 4	8주 이상 ~ 15주 미만	전공선택	9학점
	현장실습 4-1	8주 이상 ~ 15주 미만	교양 6영역 (취업과진로)	9학점
학기제	현장실습 5	15주 이상	전공선택	9학점
			교양 6영역 (취업과진로)	6학점

⑤ 창업과 관련된 현장실습 과목의 학점부여도 현장실습 프로그램 이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.

⑥ 수원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외부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점부여도 현장실습 프로그램 이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.

⑦ ICT 현장실습 교육과정의 학점부여는 별개의 “ICT 학점연계 인턴십 규정”에 따라 적용된다.

⑧ 현장실습과목 이수는 총 15학점을 초과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현장실습대상기업) ① 민간부문 : 대기업, 비영리법인, 사회단체, 연구소,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기업

② 공공부문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, 정부투자·출자·출연기관, 비영리 공익법인

제8조(현장실습의 의무위반자조치)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현장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
2. 고의적으로 현장실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
3. 고의적으로 현장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

4.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
제9조(보칙)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등 관련 규정과 현장실습 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